

IBS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및 세부기준

비공개 대상정보	세 부 기 준
<p>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의3) ②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(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) ③ <삭 제> ④ <삭 제> ⑤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(통계법 제33조) ⑥ 보안업무규정(대통령령)에 의한 국가기밀 ⑦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) ⑧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(발명진흥법 제19조) ⑨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(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) ⑩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(‘법률에 의한 명령’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)
<p>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통령·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, 대테러대비 전략, 충무계획, 대외비 및 비밀문서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·보안성 검토, 정보보호시스템

비공개 대상정보	세 부 기 준
	<p>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 및 전략 등 연구원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</p> <p>④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</p> <p>⑤ 국가 간의 회의·회담·협의·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·전략수립·협상대책·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, 훈령, 지시,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</p>
<p>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<p>① 위법행위, 부정행위 신고자, 피의자, 참고인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</p> <p>② 청사,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</p> <p>③ 위험물의 저장 위치</p>
<p>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	<p>① 행정소송·헌법소원 등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</p> <p>②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</p>
<p>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	<p>① 감사범위·방법·시기 등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관련 정보</p> <p>② 정책·제도·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·심의·조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③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</p> <p>④ 계약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/p>

비공개 대상정보	세 부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⑥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처, 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한 사항,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<p>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·처리결과 중 당해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) ② 특정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다만, 특정 임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③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(다만,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④ 개인 단말기의 IP주소, ID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
<p>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② 법인 등의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(다만,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는 공개)

비공개 대상정보	세 부 기 준
	<p>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법인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다만,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)</p> <p>④ 기술가치평가서, 기술이전 계약체결, 기술실시료 납부 및 사후관리 내용 등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
<p>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<p>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</p> <p>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 고시 전의 관련 정보</p>